

뉴욕 타임즈 사건의 판결기준이 공공관심사에 관한 사건에서도 적용된 사례

ROSENBLOOM v. METROMEDIA, INC.

미연방 제 3 회 순회항소재판소에 대한 사건이송 명령

<사실개요>

매 30 분마다 뉴스를 방송하는 피상소인의 라디오 방송국은, 상소인이 외설 출판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내용과 경찰의 외설 책자물 압수 그리고 상소인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여 자기가 배포한 잡지들은 외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영업에 대한 경찰의 간섭배제를 구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뉴스들을 방송하였다. 그 중 나중의 뉴스에서는 상소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음란 책장사, 그리고 오염한 자태의 여자그림이 들어있는 책장사들이라는 말들을 사용하였다.

상소인은 형사상으로 외설혐의를 벗게 된 뒤에 연방지방법원에 펜실베니아 주 명예훼손법 아래에서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배심은 상소인 측 주장의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 손해배상으로 2 만 5 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72 만 5 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데 나중의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손해액 감축에 의해 25 만 달러로 줄어졌다.

항소심 법원은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 사건의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가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결정적인 의미가 주어질 수는 없다는 견해를 취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인하였다.

브레난(Brennan) 판사는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적용된 「알고 있거나 또는 현저히 주의를 다하지 않은 허위」의 기준은 공적으로나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에 관련된 어느 개인에 대한 라디오 뉴스 방송에서 행하여진 명예훼손적인 허위성을 이유로 하여 그 개인이 제기한

주 명예훼손 소송에 그 적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는 수석판사와 블랙먼(Blackmun) 판사가 가담하였다.

블랙 (Black) 판사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뉴스 매체는 허위임을 알고 말한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명예훼손 판결로부터 보호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이트(White) 판사는 뉴욕 타임즈 사건에서 규정된 바의 현실적인 악의가 없는 한 수정헌법 제 1 조는 뉴스미디어에게 공무원의 공적인 행동에 대해, 어떤 공적인 행동에 관련되거나 영향 받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공적인 관점에서 신경 쓸 것 없이 상세하게 이를 보도하거나 논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브레난 판사가 법원의 판결을 쓰고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 견해에는 버거(Burger) 판사 및 블랙먼 판사가 가담하였다. 블랙 판사나 화이트 판사는 판결에 동조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하알란(Harlan) 판사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마샬(Marshall) 판사 역시 반대의견을 나타냈는데 이 견해에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가담하였다. 더글러스(Douglas) 판사는 이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클라크(Ramsey Clark)가 상소인을 위해 변론하고 그와 함께 벤자민 폴(Benjamin Paul)이 이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버나드 세잘(Bernard C. Segal)이 피상소인을 위해 변론하고 그와 함께 어빙 세잘(Irving R. Segal), 사무엘 스테디(Samuel D. Stadel), 그리고 Carlton G. Eldridge, Jr.가 서면을 제출했다.

<블랙 판사가 법원의 판결을 쓰고 견해를 밝혔는데 여기에는 수석판사와 블랙먼 판사가 가담하였다>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당 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주 명예훼손법에 과해지는 제한에 대해 고려하였다. 뉴욕타임즈 사건에서는 공직에 있는 자가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명예훼손 소송에서 앞서의 헌법상의 보장에 의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명예훼손적인 허위보도에 대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또는 사실여부에 대한 현저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똑같은 요구가 나중에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기초를 두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공적인 인물들에게 적용이 있는 것으로 판시 되었다. 뉴욕타임즈 사건 이래로 고려의 대상이 된 수개의 사건은 공직에 있는 자 또는 공적인 인물들의 사건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신문이나 잡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사건에 공통적인 것은 공공 또는 일반의 관심 대상인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명예훼손이 될 만한 허위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의 이 사건은 공직에 있는 자 또는 공적인 인물에 의해 제기되지 않고 공공의 또는 일반의 관심 대상인 사건에 관련된 어느 개인에 대한라디오 방송국의 뉴스방송에서 명예훼손이 될만한 개인에 의해 제기된 주의 명예훼손소송에서, 과연 뉴욕타임즈 사건의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인한 허위」의 기준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거 1심 지방법원은 뉴욕타임즈 사건의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펜실바니아 주 법은 이 사건에서 피상소인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289F. Supp. 737, 1968). 제 3 순회항소재판소는 뉴욕타임즈 사건의 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배심에 의해 상소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도록 한 판결을 파기 하였다.(415 F.2d8921969). 우리는 사건이송명령을 발하였고(397 U.S.904,1970), 이 사건 원심의 판결과 그 견해를 같이하여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인하는 바이다.

I

1963년 상소인은 필라델피아 시의 수도권지역에서 누드 잡지를 배포하였다. 그 해 가을 중 시민들의 불평에 호응하여 필라델피아 시 경찰당국의 특별조사단은 그 시의 음란법에 따른 일련의 단속활동을 개시하였다. Ferguson 수사반장의 지휘아래 경찰은 시 전역의 20 곳이 넘는 신문판매대에서 각종 잡지를 사들였다. 잡지들이 외설이라는 Ferguson 반장의 결정에 근거를 두고, 경찰은 1963년 10월 1일 신문판매대경영자의 대부분을 음란출판물 판매혐의로 체포하였다. 경찰이 한 신문판매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상소인은 누드잡지 몇 권을 배포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가 그 자리에서 신문팔이와 함께 체포되었다. 3일 뒤인 10월 4일, 경찰은 상소인의 집과 창고로 쓰기 위해 세넨 헛간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냈고 이들 장소에서 발견된 잡지와 책의 재고품을 압수하였다. 첫번째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소인은 압수된 사실을 알고 나자 경찰에 굴복하였고 두 번째로 다시 체포되었다.

상소인이 두 번째로 체포된 뒤 곧 Ferguson 반장은 피상소인의 라디오 방송국(WIP)과 또 다른 지방라디오방송국 통신사 그리고 지방신문에 전화를 걸어 피상소인의 가택수색과 그의 체포에 대해 알려주었다. WIP 방송국은 필라델피아 시 수도권 지역에 매 30 분마다 뉴스를 방송하였다. 이들 뉴스 프로그램은 5 분 또는 10 분 뉴스로 보통 한 뉴스 당 평균 30 초가량 소요되는 6 내지 20 가지의 다른 뉴스를 방송하였다. WIP 방송국의 1963 년 10 월 4 일자 오후 6 시의 방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에서는 음란한 상인들을 엄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반은 오늘 오후 베스타 가 1800 블럭에 있는 조지 로젠블룸(Geroge Rosenbloom)의 가택을 급습하였습니다. 경찰은 로젠블룸의 집에서 음란 책자로 보이는 1,000 권의 책자를 압수하였고 로젠블룸을 음란출판물 소지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특별조사반은 또한 브스틀턴 가 근처의 웰쉬로드 20 블럭에 있는 한 창고를 수색하여 3,000 권의 음란서적을 압수하였습니다. Ferguson 반장은 경찰이 필라델피아 시에 있는 음란서적의 주된 공급원을 소탕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오후 6 시 30 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재방송되었으나 그 보도가 세 번째로 나간 오후 8 시 뉴스에서는 WIP 가 뉴스기사의 세 번째 문장을 「들리는 바에 의하면」이라고 정정하였다. 상소인을 체포하였다는 뉴스는 그 뒤 12 시간 동안 5 회에 걸쳐 더 방송에 나갔으나 매 뉴스마다 압수된 책들을 「주장에 의하면」 또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음란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10 월 5 일부터 10 월 21 일 사이에는 상소인과 관련된 WIP 방송국의 뉴스가 방송되지 아니하였다.

10 월 16 일 상소인은 연방지방법원에 여러 시와 경찰의 공무원들 그리고 수개의 지방뉴스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상소인이 배포한 잡지들은 외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전의 체포사실을 더 이상 들먹거리거나, 상소인의 일에 경찰이 더 이상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의 금지조치를 구하는 것 이었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두 번째의 방송은 이 소송에 대한 WIP 의 뉴스보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뉴스보도는 10 월 21 일에 10 번, 25 일에 2 번 그리고 11 월 1 일에 한번 있었다. 어떤 뉴스에서도 상소인의 이름이 들먹여지지 않는 않았다. 10 월 21 일 오전 6 시 30 분에 나간 첫 번째 뉴스는 아래의 것과 거의 똑같다.

「연방지방법판사 Lord 가 오늘 두 출판업자와 한 사람의 판매상인으로부터 변론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음란물 장사를 그만 두라고 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경찰책임자 Howard Leary…… 연방 검사 James C. Crumlish…… 한 개의 지방신문과 한 신문 등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주도록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염한 자태의 여자그림이 들어 있는 책장사들은 경찰의 소탕과 경계선상에 있는 자기네들의 책을 외설이나 음란으로 계속 몰아대는 것은 자기네사업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ord 판사는 처음 이 사건을 정하고서 잠정적 금지명정을 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Lord 판사는 그 문제를 결정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만약 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에서 외설책이나 에로책들을 몰아내는데 한단계 더 위의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 월 27 일 상소인은 친구로부터 WIP 에서 자기의 소송제기에 관한 뉴스를 내보냈다는 소리를 듣고는 WIP 의 스튜디오를 찾아 갔다. 구내전화를 통해 비상근의 뉴스 방송자와 얘기하면서 상소인은 WIP 가 자기에 대해 어떤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는가 하고 물었다. 뉴스 방송자는 상소인에게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서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상소인은 1963 년 10 월 21 일 정오에 방송된 뉴스를 요청하였고, 뉴스 방송자는 상소인에게 이를 전화상으로 읽어주었다.;그것은 앞서의 오전 6 시 30 분 뉴스와 비슷하였다. 상소인에 의하면 그 이후에 주고받은 이야기는 간단하였다. 상소인은 뉴스 방송자에게 자기 잡지가 미연방대법원에 의해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야기하였다. 뉴스방송자가 지방검사는 그 잡지들이 외설이라고 말했었다고 대답했을 때 상소인은 그 잡지들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의 지방검사의 공식발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 단계에서 상소인은 「전화통화가 중단되었다.……그 사람이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상소인은 분명히 아무런 취소, 철회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런 것들은 곧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WIP 가 상소인의 소송제기에 대해 행한 최종보도는-상소인의 방송국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전화통화가 있고 난 후 유일한 것이다-방송국에서 이 이야기를 관련 판사에게 확인한 후인 11 월 1 일에 이루어졌다.

II

1964년 5월 배심은 상소인이 외설혐의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심리판사로부터 상소인이 배포한 잡지들은 법률적으로 볼 때에 외설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그를 석방했다. 무죄방면의 뒤를 이어 상소인은 펜실바니아 주 명예훼손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상소인은 WIP가 10월 4일 6시와 6시 30분의 뉴스에서 상소인의 체포사실을 보도하면서 압수된 책들을 음란한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지은 것은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것이고, 또 후일 상소인이 무죄방면 됨으로써 거짓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소인은 법원에 대해 금지명령을 구한 상소인의 소송에 대하여 이를 보도한 WIP의 두 번째 뉴스보도는 WIP가 상소인과 그의 동업자들을 음란도서 판매자들, 그리고 요염한 자태의 여자 그림이 들어있는 책장사라고 규정짓고 나아가 그 소송을 피고들로 하여금 음란도서판매장사로부터 손을 떼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잘못 단정지은 점에서 허위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리재판에서 WIP의 항변은 진실과 특권을 내세운 것이었다. WIP의 뉴스담당책임자는 자기네의 8명으로 구성된 보도진은 그들의 뉴스방송을 그들 스스로 준비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뉴스소재를 방송하였고 뉴스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들은 통신사나 전화정보에 의해 얻었다고 증언하였다. 방송준비과정에 관련된 작자나 방송자들은 누구도 이 사건에서 증언을 안 하였다. 뉴스담당책임자는 상소인의 체포와 관련된 일련의 첫번째 방송의 주된 정보원은 Ferguson 반장이었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방송국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확증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난 일을 더듬어냈다. Ferguson 반장은 자기가 WIP와 다른 보도기관에 경찰조치의 내용을 알려주었고, WIP에서는 자기가 알려준 그대로 정확하게 이를 보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WIP가 일련의 두 번째 방송에서 상소인의 제소에 대하여 조사한 것과 관련된 증거들은 훨씬 더 영성한 것이었다. 뉴스담당책임자는 자기네가 지방검사의 사무실과 경찰에 알아보려 했던 것은 확실하나 우리가 어떤 더 이상의 확증을 갖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증언하였다. 대체로 그는 WIP의 30분 마감시간 때문에 WIP에서는 통신사의 뉴스제공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이야기이든 가능한 모든 정보원과 접촉하려 하는 일반 정책에 따라 전부터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진 정보원으로부터의 구두보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III

펜실바니아 주의 명예훼손법은 그 점에 관한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관계조항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펜실바니아에서는 아무런 특권도 없이 악의로(여기에서 악의라 함은 물론 Common-Law 상의 악의를 말하는 것이고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에서의 헌법상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남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 증오나 경멸,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제소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Schnabel v. Meredith, 378Pa. 609, 107 A.2d 860 (1954); Restatement of Torts § 558,559(1938)]. 펜실바니아 주 법은 진실을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완전한 방어로 인정하고 있다.(Schonek v. WJAC, Inc., 436Pa.78,84,258 A.2d 504,5-07,1969; Restatement of Torts S 582.). 그 법은 주 고위공무원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비록 그것이 옳지 못한 의도, 현실적인 악의 또는 허위임을 알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완전히 면책됨을 인정하고 있다(Montgomery v. Philadelphia,392 Pa 178,140 A.24100,1958; Restatement of Torts § 591). 그리고 그 법에서는 뉴스매체가 사법, 행정 혹은 입법절차를 보도함에 있어 자료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오로지 명예가 훼손된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공표되지 않았다면 비록 공식적인 보도가 허위이거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조건부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Sciandra v. Lynett, 409 Pa.595, 600-601, 187 A.2d 586,588-589, 1963; Restatement of Torts § 611). 그러나 조건부인 뉴스미디어의 특권은 진실이 아닌 보도를 내보내기 전에 통상의 주의를 결여하였거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하였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통상의 주의와 근면성을 취하지않은 실책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도자를 보호하여 줄 특권을 쓸모 없게 만들 수 있다 (Purcell v. Westinghouse Broadcasting Co.,411 Pa. 167,179,191 A.2d 662,668,1963). 펜실바니아 주는 또한 확실한 방어가 되는 진실과 특권의 입증책임을 피고측에 두는 입증책임에 관한 Restatement 의 관계조항을 글자 그대로 법제화하였다.

증거조사를 마침에 있어 지방법원은 배심에 대한 배심이 상소인 측을 위한 답신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여주었다; (1) 방송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명예훼손이었을 것 (2) 분별 있는 청취자라면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이 상소인에 관련된 것이라고 결론지으리라는 것 (3) WIP 가 원고를 개인적으로 해할 의도이었던 또는 특권을 무분별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사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공식적인 소송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특권을 상실하였을 것 (4) 보도가 허위이었을 것. 배심은 판사로부터 상소인에게 첫번째 세가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보도가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상소인이 부탁한다는 내용의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설시를 들었다. 나아가 배심은 법률상의 문제로서 영업상의 손실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배상은 이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은 통상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과 똑같은 제재가 다른 TV 와 라디오 방송 그리고 신문보도의 주제이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만약 어떤 영업상의 손실이 있다면… 그것이 WIP의 방송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겨날 결과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A pp.331a.)라는 내용의 사건에 적용할 법률에 대한 설시를 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적용할 법률에 대한 법관의 설시가 있었다 .

「당신들이 만약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나쁜 동기 또는 악의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혹은 진실에 대해 경솔하게 관심을 두지 않고 공표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또 이 사건보도가 진실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당신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똑같은 종류의 행동이 장래에 일어나는데 대한 억제책으로 명해지는 것이다. 그것들은 실제로 본인이 말한 바와 같이 나쁜 동기를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경솔하게 무시한 채 일어난 언어도단의 터무니없는 행위에 대해 명해진다. 그리고 당신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기 전에 우선 이들 방송들이 나쁜 동기 또는 남의 권리를 경솔하게 무시하거나 그에 대해 경솔하게 무관심한 채 공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

배심은 상소인 승소의 평결을 하였고 통상의 손해로서 2만 5천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72만 5천 달러의 지급을 명하였다. 지방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감축과정에서 25만 달러로 감축하였다. 그러나 피상소인이 평결에 구애 받음이 없이 판결하여 줄 것을 구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그 방송들이 공공의 관심사를 취급하였다는 점과 그들이 마감시간에 쫓기면서 준비된 새로 들어온 뉴스를 포함시킨 사실을 강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승인된 수정헌법 제 1 조의 중요한 보장이 정당하게 이행된 바면 원고가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결정적인 중요성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415 F.2d at 896). 그러한 이유로 항소심법원은 뉴욕타임즈 사건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상소인의 증거는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시 하면서 위와 같은 판단이 피상소인을 위해 기입될 것을 명하였다.

상소인은 음란법을 실시하는 경찰의 캠페인이 공공의 관심사이고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에 의해 자기와 관련하여 방송된 바 있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자기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도록 강요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법을 적용하는 펜실바니아 주의 권력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소인이 제기한 제한된 문제는 상소인이 공직에 있는 자나 공적인 인물이 아니고 일반 사인이기 때문에 앞서 본 제한들로 말미암아 허위보도가 피상소인이 적절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소인이 입증하여야 하는가 또는 허위보도를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하거나 허위여부에 대해 경솔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였다는 점을 상소인이 입증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이 기능하는 배경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만 한다. (Rosenblatt v. Baer, 383 U.S.75, at 84-85, n. 10.1966)

미합중국에서의 자치는 정부 내 각종 계층에서의 엄밀하게 공적인 활동에 대하여 알거나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전제로 한다. 적법절차나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국가의 위임에 의해 이 나라에서의 생활본연과 그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한 분야의 경제적·사회적 힘이 일반 사인의 수중에 놓이게 된다. 정부통제에 의해 전적으로는 지배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살려는 우리의 노력은 좁은 의미에서의 정책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보장은 공적인 일에 대한 정치적인 표현이나 코멘트의 분야는 아니다」 (Time, Inc. v. Hill, 385 U.S.374, 388, 1967). 「토론의 자유는 만일에 그것이 이 나라에 있어서의 그 역사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정보의 모든 문제를 포용하여 야 한다」 (Thornhill v. Alabama, 310 U.S.88, 102, 1940) .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제한들-뉴욕타임즈 사건에서 최초로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그러한 제한들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시되었다-은 공직에 있는 자의 공적인 업무수행에 대하여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그들 사건에 적용되었지만 나중의 판결들에서는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사람들과 기관들로 단순히 이를 구별하려는 태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로써 그 부자연스러움을 들추어 내게 되었다.

「이 나라에 있어서 점차 정부 부문과 사적인 부문사이의 구별은 희미하게 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종래 전통적으로 공식적인 정치적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던 정책결정은 이제 정부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을 위시한 각종 위원회와 법인체, 조합 등의 복합적인 활동에 의해 비롯되고 또 수행되고있다. 이와 같은 위치와 힘의 혼합은 개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공직에 있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길이 관여하게 된다…」

「…우리들 시민계층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정당하고도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공적문제와 사건에 그들이 관련된 데 대해 제한 없이 논쟁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게재 시키는 것은 공직에 있는 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만큼이나 절실한 것이다」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 U. S. 130, 153-164(1967) (Warren, 대법원장 결론에 찬성)]

게다가 헌법상의 보호는 책임 있는 정부의 광범위한 문제들을 담고 있는 사건들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마음속에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헌법의 기초자들은…자유로운 언론이 진리와 과학, 도덕 그리고 예술을 책임 있는 정부와 함께 발전시킬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Id., at 147(Harlan 대법원 판사의 의견)]

다른 사건들에서의 코멘트들도 수정헌법 제 1 조가 공공과 이해관계 있는 무수한 사건들에 확대 적용된다는 이와 같은 판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든 타임지 대 힐 사건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사건에 관련된 새로운 역할의 전개가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공공의 관심사인 점에 아무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버츠(Butts) 사건에서는 대학축구에서 매수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된 것은 공공의 문제라고 판시 하였다. 버츠 사건의 자매편인 Associated Press 대 Walker(388U.S. 130,1967) 사건에서는 미시시피 대학에서 흑인학생의 등록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둘러싼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해 공중이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있다고 판시하여 전례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이들 사건들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무제한으로 활기차고 널리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심심한 국가적 약속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활력 또한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사건이 공공의 또는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 어떤 개인이 관련되어 있다거나 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원해서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시에 그 사건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일반의 주된 관심은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다;일반의 관심의 초점은 관계자의 행동과 그 행동의 내용, 효과, 중요성 등에 모아지는 것이지 관계된 사람이 전에 무명인 사이였는가 또는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었는가에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이 사건은 그 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사회는 형사법들, 특히 지극히 중요한 가치들이 잠재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음란과 같은 분야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공중은 그러한 형사법이 적절히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또 그러한 법이 자유로운 표현을 헌법에 어긋나게 억압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에 모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관련된 사람이 유명한 대규모의 잡지 배포자이든 또는 길가의 신문판매대를 돌며 장사하는 그야말로 일개인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점은 공중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들어있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활기찬 토론에의 약속을 존중함과 아울러 관계된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무명인이거나에 관계없이 공공의 또는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인 사건들에 대하여 하는 모든 토론이나 의견교환에도 헌법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동료법관 화이트(White)판사는,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한 보호는 발표된 이슈가 공공의 또는 일반의 관심 대상인 이슈인가에 달려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화이트판사는 우리의 이러한 견해를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에만 국한시키려 한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공적인 활동에 관련된 이슈들에만 국한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의견해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주 명예훼손법들에 대한 수정헌법 제 1 조의 영향은 원고가 공직에 있는 자, 공적인 인물 또는 일개인에 지나지 않느냐의 여부보다는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것이 공공의 또는 일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연유된 것이라는 생각이 뉴욕타임즈 사건 이후에 있는 우리의 판결들에서 나타난 것은 명백하다.[T. Emerson 의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531-532, 540}(1970)을 참조]. 그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비록 앞으로의 사건에서 용어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남겨놓고 있지만 주 명예훼손법에 수정헌법 제 1 조의 적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문제된 발언이 공공의 또는 일반의 관심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밝힐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동료법관 화이트 판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외설잡지로 주장되어 이를 배포한 자를 경찰이 체포하는 것은 분명히 공공의 또는 일반의 관심을 담고 있는 이슈로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시 결정하여야 할 이 사건의 문제로 돌아가면 일반 개인으로서는 허위의 명예훼손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이를 공표한 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헌법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상소인의 주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첫째로 상소인은 공적인 인물과 달리 일반 개인은 명예훼손이 되는 자료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뉴스매체에 접근할 수가 없고 또 공적인 인물과 달리 공적인 영역에 자기자신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당할 지도 모를 모험을 하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상소인은 명예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막고 이를 시정하는데 기여하는 명예훼손법의 중요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상소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하는 타임사 대 힐(Time Inc. v. Hill, supra at 391) 사건에서의 이론을 인정하고 또 그 사건에서 언급된 바의 뉴욕타임즈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한 경고에 대하여도 이를 지지하지만 관련된 여러 특별한 요소들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상소인의 주장이 수정헌법 제 1 조의 목적이나 우리의 사건들 그리고 명예훼손법 그 자체에 대한 전통적인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수정헌법 제 1 조의 보호라는 점에서 보아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사람의 구별을 위해 선을 긋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뉴욕타임즈 사건의 기준이 공직에 있는 자나 공적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적용된 것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복돋아 주려는 수정헌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공직에 있는 자라 하여 사생활에 있어서 일반 사인보다도 그 명예를 보호하는데 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공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비판에 대처함에 있어 뉴스미디어 측에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덜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대단히 뛰어난 몇몇 사람에 있어서는 옳지만 그래도 사후에 이를 부인한다 하여 원래의 비난을 만회 시킨 예는 거의 없다. 부인하거나 취소, 정정하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거의가 원래의 이야기보다 더 두드러질 수도 없다. 공직에 있는 자와 공적인 인물이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경우와 일반이 주시하고 있던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Rosenblatt v. Baer 를 참조) 상소인의 주장은 모두 그 근거를 잃게 된다. 중직에 있는 자와 공적인 인물이 관련된 거의 모든 명예훼손사건에서 뉴스매체를 통해 응수할 수 있는 힘은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잡한 요소에 달려있게 마련이다; 이야기에 대해 뉴스미디어가 계속해서 갖는 관심의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달린 것이다. 이와 같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고 또 전혀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일반론으로서 공공의 관심사에 관련된 공적인 인물들이라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하나의 계층이 똑같은 일에 관련된 일반 개인들 보다도 뉴스매체를 통하여 더 잘 응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헌법상의 구별로 까지 나아가기에는 너무 약한 하나의 갈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수정헌법 제 1 조와의 관계에서 치료는 병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주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관련된 보도에 적절히 응수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바면 그 해결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공적인 토론을 억누르기보다 응수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뉴욕타임즈 사건 이후 수년간을 되돌아보면 공직에 있는 자나 공적인 인물이 기꺼이 자기자신을 일반 사람에게 드러내 명예훼손을 당할지도 모를 모험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보호되는 가치나 사회 그 자체와 거의 관련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다각도로 사람이 자기자신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문명사회에 부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Time, Inc. v. Hill, at 388). 스스로 원하든 아니든 우리는 누구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공적인 사람들이다. 반대로 가장 공적인 사람들까지도 그 생활의 일부는 공공의 또는 일반의 관심 밖에 놓이게 된다[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1965)참조]. 이와 같이 일부 공적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들의 생활모두를 일반의 감시 하에 드러내 놓는 반면 일반 사인들은 그들의 생활을 베일에 싸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껏해야 법률적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구별은 공공의 또는 일반적인 관심사들에 대한 토론을 약화시키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쉽게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공적인 사람들의 생활 다방면에 대한 토론에 대해 헌법에 의해 널리 뒷받침되도록 하면서도 때로는 일반 개인들을 포함시킬 때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법에 의해 보호 받는 가치들을 일반적으로 참조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특징들이 숨겨져 있다. 전통적인 주장에 의하면 명예훼손법은 개인의 독립된 두 가지 이익을 보호한다고 한다. 첫째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인간성을 둘러싼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욕구와 둘째로 자기의 명망과 명성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이다[Rosenblatt v. Baer, 383 U.S., at 92(Stewart 판사의 찬성의견)을 볼 것]. 개인생활의 사적인 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는데 있어서와 같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적인 이익은 이 사건에서나 또는 고려의 대상인 일련의 사건들에 있어서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전제로서 그 개인은 일반 또는 공중의 관심사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소인의 영업상의평판이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주 명예훼손법에 의해 보호되는 관련 이익들은 상소인의 공공에 대한 명성과 평판이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이익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주들과 마찬가지로 펜실바니아 주의 명예훼손법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개인의 이러한 이익들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고위 공무원들은 그들이 비록 명예훼손이 되는 자료를 옳지 못한 의도로,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허위라는 점을 알고 공표하였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전적으로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Montgomery v. Philadelphia, 392 Pa. 178, 140 A. 2d 100(1958)]. 이러한 절대적인 특권은 판사들, 사법절차에 관련된 변호사들, 사법절차의 당사자, 증인들, 국회의원, 주의원, 그리고 고위 국가 및 주공무원들에게 부여되고 있다(Restatement of Torts §§ 585-592). 더욱이 앞서든 바의 완전 면책되는 사람들에 의해 공표된 허위의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을 보도하는 신문들에도 그것이 정확히만 보도되었다면 조건부의 특권이 허용된다 [Sciandra v. Lynett, 409 Pa. 595, 187 A. 2d 586(1963)].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헌법상 요구되는 바가 없어도 펜실바니아 주 명예훼손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인 이익은 종종 다른 중요한 사회적 목표에 의해 뒷전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절실한 필요에 의해 공표자가 타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배심의 결정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들 중대한 자유들에 충분히 숨돌릴 만한 여유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적절한 주의라는 것은 모호한 기준으로서 보도기관으로 하여금 보도기관이 사람의 이름, 사진 또는 초상에 대한조회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입증할, 보도기관에 의해 취해진 적절한 조치들을 배심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추측하여야 하는 건디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TimeInc.v.Hi11,385 U. S., at 389). 잘못 추측하는데 대한 두려움은 틀림없이 스스로 통제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하여 정당한 발언이 제지되는 위험을 남고 말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통상 민사소송을 증거의 우세함에 의해 결정한다. 실제로 판사는 배심에게 이 사건을 그 기준에 의해 결정하도록 사전설명을 하였다. 이 기준이 채택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고를 위하여 잘못 판결이 나는 것 이상으로 피고측을 위하여 잘못 판결이 나는 것을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원고측에 유리하게 잘못판결이 나는 것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피고에게 무고한 허위발언에 대해 벌금을 물리고-이 사건에 있어서 75 만 달러에 이르는 수준의 판결도 그러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지만-뿐만 아니라 부주의의 기준, 그 자체의 애매함을 넘어 그러한 잘못이 있으리라는 개연성은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 용납되지 않는 자기검열의 방향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들 언론 · 출판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책임을 인정하자는 원칙이 한 정치적 캠페인의 수행에 적용이 있다고 주장되었을 때 이 원칙이 단순히 수정헌법 제 1 조 아래에서의 우리의 국가적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Monitor Patriot Co. v. Roy, 401 U. S.265, 276(1971)]. 똑같은 생각에서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이 사건에서도 채택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언론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의해 주어진 자유를 심히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남용에 대해 이를 개탄하여야만 옳다. 이상적인 세계에서 언론의 책임은 자유 그리고 언론에 주어진 일반의 신뢰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초창기부터 우리의 자유로운 사회는 생존을 위해서와 같이 활기차고 자유로운 언론에 의지한 상태에서 약간의 남용은 이를 인내하여 왔다. 1799 년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미국의 신문들에 대한 Talleyrand 의 불평에 대해 마셜(Johm Marshall)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의견을 말한 바 있다.[American State Papers,2 Foreign Relations 196 (U.S. Cong.1832)]:

「정부가 외경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신중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신성하게 생각되는 원칙 중에, 그리고 자유의 보루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성한 권리들 중에 언론의 자유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중요함이 깊이 박혀있는 것은 없다. 이 자유가 간혹 도에 넘치게 수행되는 것, 즉 가끔 방종에 흐르는 경우가 보이고 또 개탄 되어지지만 아직 그 구체책은 나와있지 않다. 아마도 그것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 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악과 같고 나무를 치명적으로 다치지 않고는 줄기에서 떼어낼 수 없는 어린 가지와도 같다. 언론을 예측화 시키지 않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할 터이지만 그러한 것은 아직 미국에서는 마련되지 않았다」 [6 Writings of James Madison, 1790-1802, p.336 (G. Hunted 1906)]다.

당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제를 인정하여 왔다.

「공공의 일에 대한 진실의 확인과 공표를 보증함에 있어 수정헌법 제 1 조가 진실한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잘못된 공표들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St. Amant v. Thompson, 390 U.S.727, 732, 1968).

그리하여 우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공의 또는 일반의 관심대상 사건에 관련된 일반 개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뉴스보도에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다 하여 정규라디오방송국을 상대로 일반개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사건은 명예훼손이 되는 허위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행하여졌거나 또는 진위여부에 대해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고의에 의한 허위보도는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Garrison v. Louisiana, 379 U.S.64, 75, 1964)

우리들의 동료법관 하알란 판사와 마샬 판사는 적어도 명예훼손을 당한 자측에서 과실에 의해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test에 찬성하면서 「고의적 또는 부주의에 기한 허위」의 기준에는 반대한다: 그들은 또한 어떤 손해 배상이든지 이를 현실적인 손해에 국한시키려 한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이유들에 의해

과실에 의한 기준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가치들이 충분히 숨돌릴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다.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에 국한시키는 것도 동일한 결점을 갖고 있다. 우선 첫째로 그러한 기준은 역시 수정헌법 제 1 조가 기능을 발휘할 충분한 영역을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검열의 결과로 이끌 손해배상판결의 가능성은 아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을 끄는 절차로서 소송에 관련되게 할 바로 그 가능성은 토론이나 논쟁을 불법적인 방향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나아가게 하고 그것에 의해 보호를 받는 토론은 일반의 인식 밖에 두기에 충분한 위협이 된다 (Speiser v. Randall, 357 U.S., at 526). 동시에 소규모의 신문사도 손해배상의 명칭이 현실적 이든 징벌적이든 동일하게 실질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동료법관 하알란과 마샬 두 판사의 입장에서 정말 비판 받아야 할 것은 그들의 제안이 사실조사 과정을 헌법상의 것으로 하지는 않으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분명히 그들의 test 가 실제에 있어서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문제해결 방법은 단지 사실조사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고의로 또는 부주의 하에 행하여졌는가의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그것들이 과실에 기해 행하여졌는가의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원고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심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 후자의 심리는 법관을 더욱 사실조사에 깊이 관여하게 할 것이다. 주 의회가 단순히 곤란이나 고통이 측정 가능한 현실적인 손해들이라고 발표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손해 배상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행하여 저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의 해결방법이 취하여지든 당 법원으로서 공극적으로 과실과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헌법상의 정의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이들 특별히 고려의 대상이 될 점은 차치하고 우리는 누차 법원은 이 분야에서 사실조사가 단지 시간 낭비이고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조사 과정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우리는 Pennekamp 대 Florida(328U. S.331,335, 1946)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즉

「헌법은 사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해석을 필요로 하는 도구로서의 말들에 대해 그 의미와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당 법원에 부여하였다. 그러한 책임에 의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된 발언이 수정헌법 제 14 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채택된 대로의 수정헌법 제 1 조 원칙들에 의해서 보호 받는 것인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된 발언과 그 발언이 행하여진 상황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분명히 당 법원으로서도 수정 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판결들을 테스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함에 있어 당 법원은 사건의 사실들에 대해 독립된 헌법상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Jacobellis v. Ohio, 378 U.S. 184, 190, 1964). 분명한 사실은 헌법적인 사실에 대한 수정헌법 제 1 조의 문제들이 이 법원으로 하여금 재차의 재검토를 하게 하는 것이다. [Edwards v. South Carolina, 372 U. S. 229, 235 (1963) , Blackburn v. Alabama, 361 U. S. 199, 205 n 5 (1960) 등을 볼 것]

VI

상소인은 징벌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사전설명에 의해 WIP 방송국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인정에 기초를 두고 일반의 손해배상을 하여 주도록 한 사전설명은 치유되었거나 아무런 해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 전제의 옳고 그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나 실사 그와 같은 사전설명이 알았거나 부주의에 기한 허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행하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기준 아래 상소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줄 수 있기 위한 증거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들 사건에서 우리의 임무는 헌법상의 원칙들을 정교히 하는데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는 동시에 그러한 원칙들이 항법적으로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사건에서 증거를 재검토하여야만 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at 285).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록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증거를 개별적으로나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명예훼손이 되는 허위보도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거나 또는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 현저하게 부주의한 채 행하여졌는가의 여부를 배심에게 물어보기에 필요한 만큼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헌법상의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증거는 없다는 항소심의 결론과 견해를 같이 하게 된다.

상소인에게 가장 유력한 증거는 지방검사가 상소인의 잡지들을 음란한 것으로 규정 지었다는 뉴스방송자의 말을 상소인이 반박할 때 한 비상근 뉴스방송자가 전화를 끊은 바 있던 WIP 방송국의 스튜디오를 상소인이 찾아간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촉은 두 번째 시리즈로 나간 방송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이 이미 나간 뒤에 일어났다. 이 사건은 상소인의 사건이 일련의 첫번째 시리즈로 나간 방송에 관계가 되는 한

아무런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부분의 상소인 사건은 10 월 4 일자 오후 6 시와 6 시 30 분에 처음으로 나간 방송에서 상소인이 배포한 잡지의 성격을 나타냄에 앞서 「주장된」이라는 말을 빼버렸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빼버린 것은 오후 8 시 방송에서는 바로 잡아졌고 이후 계속된 5 번의 방송에서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소인의 소송제기에 관한 10 월 21 일자 그리고 그 이후의 방송들에 근거를 둔 상소인의 이 사건에 관한 한 앞서의 에피소드가 뉴욕타임즈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거로 제공될 수 없다는 결론을 항소심 법원으로 하여금 내리게 하고 우리에게도 같은 결론을 얻게 하는 항소심법원의 분석결과에 우리는 의견을 같이한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뒤 방송은 단 한번 나갔다. 그 방송은 원고가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보도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지방검사가 원고의 책자들을 음란하고 부도덕한 책자로 생각한다고 말하여졌다. 증언서의 사본을 볼 것 같으면 원고측 변호사는 피고의 대표자에게 최종뉴스에서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 할 때 자기는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동일한 증인에 대한 그의 과문 결과 피고의 대표자는 방송이 나가기 전에 관련판사에게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상의 에피소드가 연방기준에 따라 배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납득할 만큼 명확하게 현실적 악의의 증거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415 F.2d, at 897.)

상소인은 끝으로 WIP 방송국이 이 사건의 상소인 측 사정을 알기 위해 상소인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않고 또 세심히 살펴보기 위해 책자를 얻어보지 아니한 잘못은 뉴욕타임즈 기준에 따른 평결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우리의 사건들에 있어서 부주의한 행동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이를 공표하였을 것인가 또는 공표 전에 면밀히 조사해 보았을 것인가의 여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피고가 실제로 공표사실의 진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허용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St. Amant v. Thompson, 390 U.S.,at 731.). 피상소인은 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의존하였다. 정확한 방송보도에 대한 상소인의 주장을 따름에 있어서도 WIP 는 최종보도를 하면서 사건을 주재한 판사와 의논한 바 있다. 우리는 지방법원에서 피상소인이 상소인의 사업을 음란책 장사, 그리고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오염한 자태의 여러 그림이 들어있는 책장사라 부른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록상 피상소인이 실제로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확인함.